

대전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1가단146239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등]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대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병진

피고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김윤관

변론 종결2023. 2. 1.

판결 선고2023. 4.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52,8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41,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20. 7. 20.자 합의에 의한 2019년 개발용역비 53,909,091원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정보통신 관련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피고 B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 B의 사내이사이었던 D이 대표이사가 되어 설립한 회사이다.

나. 1차 개발계약

1) 원고는 2019. 7. 11. 피고 B와 E 통합솔루션용 전시회 및 데모시스템 개발계약(이하 '1차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 B는 원고의 E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통합솔루션(각종 S/W 및 서비스, H/W의 개발, 기술개발, 기술지원 등)용 전시회 및 데모시스템을 피고 B가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진행하는 사업 및 프로젝트들을 위한 전시회 및 데모시스템 개발을 위해 피고 B의 제품과 기술을 바탕으로 솔루션을 장기적으로 개발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통합솔루션을 제공함에 있다.

제2조(계약기간)

- 1) 본 계약은 최초 계약기간을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 2) 계약기간의 개발범위, 일정, 투입인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원고와 피고 B가 협의하여 별도의 첨부문서(E 서비스 개발)로 대체한다.

제3조(양사의 의무)

- 1) 원고는 E 서비스 구축과 관련한 H/W 인프라 장비 및 데이터센터 비용을 부담한다.

2) 피고 B는 원고와 협의하여 첨부한 개발내용과 일정을 근거로 하여 개발한다(기능명세서, 스토리보드, E 서비스 개발).

3) 피고 B는 원고가 F로부터 받는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기술협의 및 검토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통합솔루션 대금)

원고는 피고 B에게 본 계약에 따른 통합솔루션을 제공받는 대가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대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한다.

개발용역비

1) 개발비의 총 금액은 4,000만 원으로 하며 대금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7월 개발비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과 동일 금액인 8월 개발비에 대한 정산은 원고가 정하는 별도 정산자료에 의해 지급하도록 한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1차 개발계약과 관련하여 2019. 7. 12. 2,000만 원, 2019. 8. 26.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2차 개발계약

1) 원고는 2019. 8. 30. 피고 B와 1차 개발계약에 따라 피고 B가 개발하기로 한 통합솔루션에 모바일 라우터 기능을 추가한 플랫폼 개발계약(이하 '2차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 B는 원고의 G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통합솔루션(각종 S/W 및 서비스, H/W의 개발, 기술개발, 기술지원 등)을 피고 B가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진행하는 사업 및 프로젝트들을 피고 B에게 공유하여 피고 B의 제품과 기술을 바탕으로 솔루션을 장기적으로 개발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통합솔루션을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각각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최초 계약기간을 2019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의 개발범위, 일정, 투입인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G 서비스 개발"의 첨부문서로

대체한다.

3) 단, 상기 2)항의 조건이 변동이 있는 경우 원고, 피고 B 양사는 변경된 조항에 대한 부분을 별도의 부속계약서로 작성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절차를 완료한다.

제3조(양사의 의무)

1) 피고 B는 첨부한 개발내용과 일정을 근거로 하여 개발한다(기능명세서, 스토리보드, G 서비스 개발).

2) 원고는 매월 피고 B가 진행해야 되는 대상 업무목록에 대한 리스트 및 이에 대한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여 피고 B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통합솔루션 대금)

원고는 피고 B에 본 계약에 따른 통합솔루션을 제공받는 대가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대금을 피고 B에 지급한다.

1) 개발용역비

(1) 개발용역비의 총 금액은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대금 지급에 대한 정산 방법과 시기는 2019년 12월에 지급하도록 한다. 단, 대금지급 시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지급시점 2주 전에 별도 협의하여 지급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2) 모바일 라우터 개발

(1) 피고 B는 원고가 F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딥러닝 기반의 서버형 음성인식 서버'기술을 이용하여 모바일 라우터 제품을 개발한 후 원고에게 공급한다.

(2) 모바일 라우터 개발 용역의 결과물은 기본적으로 원고와 피고 B의 공동 소유로 하며, 개발수행 중 얻은 모든 자료는 개발 중과 완료 시 원고와 피고 B가 동시에 공유 및 보유토록 한다.

(3) 모바일 라우터 개발 후 상품공급조건은 원고와 피고 B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원고가 2019. 9. 19. 작성한 G 개발을 위한 기능명세서(통합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프로젝트 범위

G는 다자간 실시간 통번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다.

가. 통번역 서버: 서버 프로그램으로는 언어별 STT엔진 및 MT엔진이 있고 특정 언어에 대한 STT엔진이나 MT엔진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에 상황에 맞는 엔진을 선택하는 기능이 있다. 그 외의 서버 프로그램으로는 사용자(서비스 이용자 및 통역가)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

나. 통역가용 응용프로그램: 통역가를 위한 UI를 갖춘 응용프로그램

A. iOS 및 Android용 모바일앱

B. PC/Mac용 응용프로그램

다. 서비스 이용자용 응용프로그램

A. iOS 및 Android용 모바일앱

B. PC/Mac용 응용프로그램

라. 운영자 관리페이지: 서비스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사용자 관리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한 웹페이지이다.

마. 모바일라우터: 다자간 대화에서 허브 스피커 역할 및 통번역 서버와 연동하는 통신장치 역할을 하고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미리 설정된 통번역 언어에 대한 임시서버 역할을 수행하는 하드웨어 장치이다.

(이하 가.~마 각 구성요소 별 기능 요구사항은 생략)

3) 대금지급내역 원고는 피고 B에게 2차 개발계약과 관련하여 2019. 10. 4. 800만 원, 2019. 11. 20. 900만 원, 2020. 3. 4. 9,090,909원, 합계 26,090,909원을 지급하였다.

라. 2020. 4. 24.자 합의

원고는 2020. 4. 24. 피고 C와 1, 2차 개발계약과 관련한 2019년 미지급 개발용역비 53,909,091원{= 1차 개발계약 용역비 4,000만 원 + 2차 개발계약 용역비 8,000만 원 - 기지급액 66,090,909원(= 40,000,000원 + 26,090,909원)}의 정산방법과 2020년 용역개발비(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운영되는 H캠프 인건비 및 운영비용)의 정산방안 및 개발 후속지원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마. 2020. 7. 20.자 합의

원고는 2020. 7. 20. 피고들과 1, 2차 개발계약을 포함한 G 서비스 사업개발 정산과 추가 개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2019년 개발용역비에 대한 정산)

1. 지급주체: 원고
2. 정산내역: 첨부 #1 미지급 개발대금 정산내역 참조
3. 2019년 미지급 대금 53,909,091원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 A. 동 채권은 피고 B에 있다.
- B. 동 채권의 지급은 상기 일정으로 원고에서 피고 BWI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2020년 개발용역비에 대한 정산)

1. 지급주체: 원고
2. 정산내역: 첨부 #1 미지급 개발대금 정산내역 참조
3. 2020년 3월, 4월, 5월 기간 동안 운영된 H개발캠프 비용 77,304,545원은 원고가 2020년 9월 30.일까지 전액 현금으로 2회 분할하여 결재한다.
- A. 동 채권은 피고 C에 있다.
- B. 동 채권의 지급은 상기 일정으로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한다.
4. H개발캠프 비용 77,304,545원 중에서 20,000,000원은 피고 C이 2020년 7월 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원고가 2020년 7월 31.일까지 현금으로 결제하며, 잔금 57,304,545원은 원고가 8월 31일과 9월 30일까지 각각 50%씩 2회 분할하여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5. 상기 정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양사는 동의한다.
- A. 피고 C은 2020년 7월 31.일 최종 청구일까지 아래 개발사항(2020년 4월 24.일 합의 기준)을 원고에게 제공 완료하여야 한다.
- B. 2020년 6월 16.일 릴리즈 빌드업 버전 기준의 안드로이드 앱 빌드 기준으로 Android(32bit, 64bit), iOS(iPhone UI), Windows(Window 8 이상), MAC(OS Catalina 기준) 버전의 애플리케이션 패키징을 7월 31일까지 완료한다. 단, 스토어 게시 시점은 구글 및 애플 정책에 따른다.
- C. 다운로드(텍스트) 기능

D. 하자보수를 넘어서는 기타 성능개선 작업은 유상개발 계약에 의해 진행한다.

E. 상기 A. B. C.항의 개발 후 2020년 8월, 9월 2개월간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한다. 단, 하자보수기간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운영과 서비스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는 제외한다.

(2020년 추가 유상 개발)

1. 지급주체: 원고

2. 수행주체: 피고 C

3. 추가 개발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A. 추가 개발의 범위: 첨부 #2 추가 기능 유상 개발(생략)과 같다

2020년 개발용역비에 대한 정산 관련 개발범위 중 정산 개발은 개발 범위에서 제외하고, 다운로드 기능에 오디오북(텍스트에 오디오 임베딩 형태로 구성) 기능을 추가 개발하여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범위와 비용을 상계한다.

B. 추가 개발 일정

피고 C은 A. 추가 개발 사항에 대하여 2020년 7월 31.일까지 개발 완료한다. 단, 영문 버전 웹개발은 원고와 기획, 사전작업 협조를 감안하여 8월 31일까지 개발 완료한다.

C. 개발 비용

개발 내역 및 비용: 1,700만 원(상세 내역 첨부 #2 참조)

개발 비용은 원고가 2020년 9월 30.일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D. 하자 보수

상기 추가기능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2020년 9월 31.일까지로 한다.

(특약 사항)

3. 원고가 상기 H캠프 비용(77,304,545원)과 추가 유상개발 비용(17,000,000원)을 2020년 9월 30.일까지 지급할 경우, 피고 C은 사업협력 계약 또는 개발/운영 계약 연장과 관계없이 개발소스를 포함한 개발 산출물을 원고에 제출한다. 단, 원고가 2019년 미지급 대금(53,909,091원)과 H캠프 개발 비용, 추가 유상개발 비용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개발 SW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 C에 있다.

4. 원고와 피고 C은 본 합의를 기점으로 2020년 5월까지의 양사에서 각기 야기된 이슈 등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가지며 상대방에 대하여 추가적인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는다.

첨부 #1 미지급 개발대금 정산내역

2019년 미지급	피고 B	53,909,091원		53,909,091원
H캠프 인건비	피고 C	110,850,000원	42,545,455원	77,304,545원
H캠프 경비	피고 C	9,000,000원		
합계		173,759,091원	42,545,455원	131,213,636원

바. 원고는 2020. 9. 3. 피고 C으로부터 2020년 개발용역비 잔금 94,304,545원(= H캠프 인건비 110,850,000원 + H캠프 경비 900만 원 + 추가 유상개발비 1,700만 원 - 기지급액 42,545,455원)의 지급을 요청받게 되자, 2020. 9. 4. 피고 C에게 용역개발 결과물의 공급을 요청하고, 피고들에게 피고 C이 2020. 7. 31.까지 원고에게 용역개발 결과물과 2020년 추가 개발 용역 결과물을 납품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20.자 합의를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갑 1~4, 9, 10, 12, 15~17, 19, 20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과 피고 C이 용역개발물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 B에게 지급할 2019년 개발용역비를 포함한 용역개발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 C은 2020. 7. 31.까지 2020. 7. 20.자 합의에 따른 개발을 완료하지 못해 원고가 2020. 9. 4. 피고들에게 2020. 7. 20.자 합의의 해제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20. 7. 20.자 합의에 의한 2019년 개발용역비 53,909,091원의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에게 지급한 개발용역비 5,28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피고 C에게 지급한 개발용역비 4,1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 C이 용역개발물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 B에게 2019년 개발용역비 53,909,091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들이 G 서비스 사업개발

정산과 관련하여 2020. 7. 20. 최종 합의를 하면서 피고 C에게 지급할 2020년 개발용역비에 대해서는 피고 C이 2020. 7. 31.까지 2020. 4. 24. 합의를 기준으로 한 개발사항을 원고에게 제공 완료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반면, 2019년 개발용역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약정을 부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 C의 위 개발사항 제공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피고 B에게 2020. 4. 24.자 합의에 따라 2020. 12. 31.까지 2019년 개발용역비 53,909,09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20. 9. 4. 해제 통보가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한다.

위 2020. 7. 20.자 합의에 의하면 피고 C이 2020. 7. 31.까지 2020. 4. 24. 합의를 기준으로 한 개발사항을 원고에게 제공 완료할 의무는 원고가 2020. 7. 31.까지 피고 C에게 2020년 개발용역비(H개발캠프 비용) 77,304,545원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할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는데, 원고가 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할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2020. 9. 4.자 해제 통보는 그 효력이 없다(피고 C이 2020. 7. 20.자 합의 전인 2020. 7. 1.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이행제공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C에 의하면 원고가 프로그램 소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2020. 9. 4.자 해제통보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기지급 개발용역비 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준호